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5절에 제7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상의 청산 절차가 없어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제7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중전의 민영화된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민영화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민영화 지침이나 감사원 권고 등에 의해 지방공사를 민영화하는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

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당해 지방공사의 매수인이 등기소에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7년 1 월19일

국무총리 한 명 숙

국무위원
문화관광부장관 김 명 곤

●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동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게임물

제2조제6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
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2조제8호 중 “게임제공업”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다목의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
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제9조제2항 중 “불법복제품”을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로 한다.

제11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
다.”로 하고, 동항제1호 중 “게임과몰입이나 사행행위”를 “게임과몰입
이나 사행성·폭력성·선정성”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제21조제2항
제1호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을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
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5

-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③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를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로,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를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등급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다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등급위원회에 신청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3(회의록) ①등급위원회는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위원회 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를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무국의 조직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21조제4항의”를 “제21조제7항의”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 이 하며, 동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제5항·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 에 따른 게임물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⑧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를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을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등급분류 결정 또는 사행성게임물 결정에 대하여”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다시 하거나 사행성게임물 결정을 취소하여”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를 “제21조제2항의”로, “사행성게임물 결정”을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8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하지”를 “등록하지”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고한”을 “등록한”으로, “변경신고를”을 “변경등록을”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으로, “신고증을”을 “등록증을”로 하며, 동조제4항 중 “신고 및 변경신고의”를 “등록 및 변경등록의”로, “신고증의”를 “등록증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등록”을 “허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 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2항(중전의 제1항) 본문 중 “게임제공업”을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전의 제

2항) 단서 중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를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한다.

제26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으로,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으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을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1호 중 “등록취소처분을”을 “허가·등록 취소처분을”로 하며, 동조제2호 중 “등록취소처분을”을 “허가·등록 취소처분을”로 한다.

제28조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중전의 제5호) 본문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을 “게임물”로,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으로 하고, 동호 단서 중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속할”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제29조제1항 중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를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신고를 한 영업자가”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신고 또는 등록이 말소된”을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을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로 하며, 동조제4항 중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게임제공업”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을”을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33조제2항 중 “당해 게임물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중 “게임제공업”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한다.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제35조의 제목 “(등록취소 등)”을 “(허가취소 등)”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신고”를 “등록”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신고한 때”를 “등록한 때”로 하며, 동항제3호 중 “변경신고를”을 “변경등록을”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를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로, “등록취소”를 “허가·등록취소”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취소”를 “허가·등록취소”로 하며, 동항제1호 중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로 하고, 동항제3호 중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로, “등록기준을”을 “허가·등록기준을”로 하며, 동항제4호 중 “제26조제3항의”를 “제26조제4항의”로,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35조제3항 중 “등록의”를 “허가·등록의”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을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제공업”을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을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로 하며, 동항제2호 중

“제28조제4호 내지 제7호의”를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등록취소처분을”을 “허가·등록 취소처분을”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중 “신고”를 “등록”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 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시험용 게임물로서 제21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물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2의2. 제2조제6호다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를”을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로 하며, 동항제2호 중 “게임제공업”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2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제4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 중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로 한다.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제45조제2호 중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을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 중 “제35조제2항제1호의”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로, “등록을 한 자”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로 한다.

3의2.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 공한 자
제46조제1호 중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단서의”를 “제26조제3항 단서의”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제28조제6호의”를 “제28조제7호의”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변경신고”를 “변경등록”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의”를 “제26조제4항의”로,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 지”로 하며,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 중 “제28조제5호의”를 “제28조제6호의” 로,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로 한다.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에게 재분류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32조제1항제7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제2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
한다.

제2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
업자 중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자로 허가를 받
고자 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
업자 중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의 불
법 환전 등에 따른 사행심 조장 등으로 도박중독자가 양산되
고 사행성 PC방 등으로 사행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사행성 게
임물을 정의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세분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며, 일반게임제공
업을 허가제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등록제
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며,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 등을 금지함으로써 사
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법 제2조제1호의2 신설)

사행성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
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에 해당하는 게임물
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로

정의함.

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법 제16조제3항·제17조제2항·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8항 신설)

(1)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2)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기능에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을 명시함.

(3)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세분화 및 사후관리 강화(법 제21조제2항, 법 제21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1)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4단계로 분류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하도록 함.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등급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

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라.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법 제22조제2항)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을 등록제도로 변경(법 제25조제1항)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함.

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제도 등(법 제26조)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 등(법 제28조제3호 단서 및 법 제28조제5호 신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 경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등에 따른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게임제공업소에

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함.

아.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 등 금지(법 제32조제7호 신설)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함.

자. 게임물의 광고·선전시 사행심 조장 내용 제한(법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차. 신고포상제도 도입(법 제39조의2 신설)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통령 노무현 ㉠

2007년 1월19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

●법률 제8248호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赤十字社組織法”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